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8. 31.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1월 18일 신종갑의원 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15. 12. 4.)  
상정, 심사, 보류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2015. 12. 16.)  
상정, 심사, 보류  
제20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2016. 8. 3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강희향 의원

### 가. 제안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현재 서울의 서부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위원회를 설치·지원하도록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2)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신분으로 구의원 2명, 철도, 토목, 건축, 전기, 교통, 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포구민과 사회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정함 (안 제5조)
- 3)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4)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5)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도록 정하고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 완료시까지 존속하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송인수)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현재 서울의 서부 지역과 경기도 부천시를 연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신분으로 구의원,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포구민과 사회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정하여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분과위원회 설치, 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조례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사업 완료시 까지 존속하도록 정하였음.
-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한 것으로,
- 장래의 수도권 한강횡단 철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서부지역 교통수요 분담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구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마포구 관내 지하철역 정거장 추가 설치 추진을 위해서라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실정에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현재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하여, 정부(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로, 본 사업이 확정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